

## 채권차액지급신고

채권자 겸 매수인 ○○○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 무 자 ◇◇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위 당사자 사이의 귀원 20〇〇타경〇〇〇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매수인 겸 채권자는 금 〇〇〇〇원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어 20〇〇. 〇. 〇.에 매각허가를 받았으며, 매각대금지급기일이 20〇〇. 〇〇. 〇〇.로 지정되었습니다. 그러므로 매수인 겸 채권자는 위 돈을 내야 하는 반면 채권액을 배당 받아야 하므로 위 매각대금에서 매수인 겸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을 지급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첨 부 서 류

1. 채권계산서

1통

20 ○ ○ . ○ . ○ . 의 채권자 겸 매수인 ○ ○ ○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| 제출법원 | 배당법원  | 관련법규 | 민사집행법 | 제143조제2 <sup>호</sup> <b>%</b> |
|------|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출부수 | 신청서 1부 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 타  | ·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수 있음. 이 경우에 매수인이 배당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함(민사집행법 제143조제2항, 제3항).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강제집행